

##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「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고흥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21년 6월 1일

고흥군의회의장



### 1. 개정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개정 및 제정 사항을 반영하여, 관련 조항을 수정

### 2. 주요내용

- 안 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 제1항 제5호의 「지방공기업법 제 77조의 3의 규정」을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」으로 변경

### 3. 예고기간

- 2021. 6. 1. ~ 2021. 6. 7. (7일간)

#### 4. 의견제출

○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1. 6. 7.(월)까지  
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(의회사무과)로 제출하여  
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내용 :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(찬반여부와 그 이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

- 개 인 : 성명, 주소, 전화번호

- 기관·단체 :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, 주소, 전화번호

○ 제출처 : 고흥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주 소 :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(59542)

- 전 화 : 061-830-6065 (FAX 061-830-5595)

○ 제출방법 : 우편, FAX, 직접방문

붙임 1.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 끝.

#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재학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62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1. 5. 28.

발 의 자: 이재학 · 이연숙 · 박미옥 ·  
류동철 의원

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 본문 중 “법 제113조 내지”를 “**법 제113조부터**”로 한다.  
제5조제1항제5호 본문 중 “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사, 공단외의 출자, 출연법인”을 “**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**”으로, “4분의1이상 출자 또는”을 “**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**”로 한다.

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<u>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</u>에 따른 <u>군의 소속행정기관</u>과 <u>법 제117조 및 제120조의 규정</u>에 따른 <u>하부 행정기관</u></p> <p>3~4. (생 략)</p> <p>5. <u>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의 규정</u>에 따른 <u>지방공사, 공단외의 출자, 출연 법인 중 군이 4분의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</u>, 다만, <u>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</u>에 <u>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, 회계,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.</u></p>	<p>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 ①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법 제113조부터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3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</u>에 따른 <u>출자·출연 기관</u> ----- <u>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##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 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내 용	의 견	비 고